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음자범위) 1. 사용시설자금 :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이내 2. "생략"	제7조(음자범위) 1. 70%.....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93. 3. 16.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1. 29.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93. 2. 1.
- 다. 상정일자 : 제1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93. 3. 16.)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이상환)

-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 위탁해지 사유를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1) 행정영역의 확대에 따른 행정작용의 다양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양적으로 팽창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고, 전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동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수입대상 선정시 신용과 재정동 수입능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서달 및 행정제재등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전병만 위원) : 시우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가?
- 답변(토목과장 이상환) : 맞음.
- 질의(윤명규 위원) :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해도 좋을 것을 위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 답변(건설국장 김영규) : 각구가 대체적으로 도로굴착 허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 내지 2명으로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으며, 또한 전문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음.
- 질의(김종열 위원) : 시우회에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는가?
- 답변(토목과장 이상환) : 우리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 29.

제 출 자 : 마 포 구 청 장

1. 제정사유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6조)
- 위탁 해지사유를 정함(안 제7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위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
2. 사용자제 품질의 적합성 여부 확인
3.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4.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한 사항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공사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지도, 감독)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
직원의 교체 요구 및 위탁의 해지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
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수탁자에게 위탁업무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
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개정 84.2.29)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
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2.29)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
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
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84.2.29)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93. 3. 1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3. 9. 마포
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93. 3. 10.
- 다. 상정일자 : 제14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3. 17)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
영목)

가. 제출이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대상 재산 : 용강동 115-5의 2필지
- 매각대상 재산 : 현석동 106-14의 3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항목
별 내용을 보면, 용강동 115-5 김익배
소유재산의 취득은 관내 노인들의 숙원사
업인 노인회관을 건립, 도시노인들의 휴
식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아현동 380-78및 380-79 2필
지의 취득은 아현1동 노인정 건립을 위
한 부지임. 현재 아현1동 노인정은 협소
할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의 자동차소음등
주변환경의 악화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
임. 상기3필지의 재산취득비용은 '93년도 예
산에 기 반영되어 있음. 현석동 106-14소
재 물건등 매각 4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매